

의 안 번 호	제 869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9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유재목,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현행에 맞게 4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시행계획 결과 등을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5년마다'에서 '4년마다'로 변경 및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3.
- 협 의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비용추계 : 비용추계 제외 사유서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 ----- ----- ----- ----- ----- --.

제4조(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① -----
----- 4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며,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